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·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오 옥 자 의원)

의 안 번 호	23-178

발의년월일: 2023. 11. .

발의자: 오옥자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김승수, 백남환, 신종갑, 이한동, 장정희, 차해영, 한선미, 홍지광

1. 제정이유

미래세대의 필수 덕목인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포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차별 없이 창의·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나. 창의·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다양한 체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다.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가.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추후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11. 16. ~ 11. 21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·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을 위한 창의·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창의·인성”이란 사회·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.
3. “창의·인성교육”이란 ‘창의·인성’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‘창의교육’과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인성교육’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·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.

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

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차별금지)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·장애여부·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·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의 범위 등) ① 구청장은 창의·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

2. 예(禮), 효(孝)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,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
3.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
4.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

5. 학생의 진로 탐색·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

6. 그 밖에 창의·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·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,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

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인성교육진흥법

[시행 2020. 9. 12.] [법률 제17472호, 2020. 8. 11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,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